

【 붙임 1 】

##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건전한 건설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건설업 교육제도가 신설(2016.2.11)됨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교육 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업종등록 제외) [의무사항]
  - 2016. 2. 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 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처분 이후 정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의무사항]
  - 2016. 2. 12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 법인 대표자 수료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시 1인당 5일 감경 (최대 3인)

### ○ 교육 참석 대상자

-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 개인 : 대표자

###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시 간
건설업자 윤리경영	○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1.5H
건설산업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계약법	4.5H
건설공사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2H

※ 교육시간 : 1일 8시간 집체교육 (09:00 ~ 18:00)

※ 교육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시행일 : 2016. 2. 11]

- ①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건설업을 신규등록 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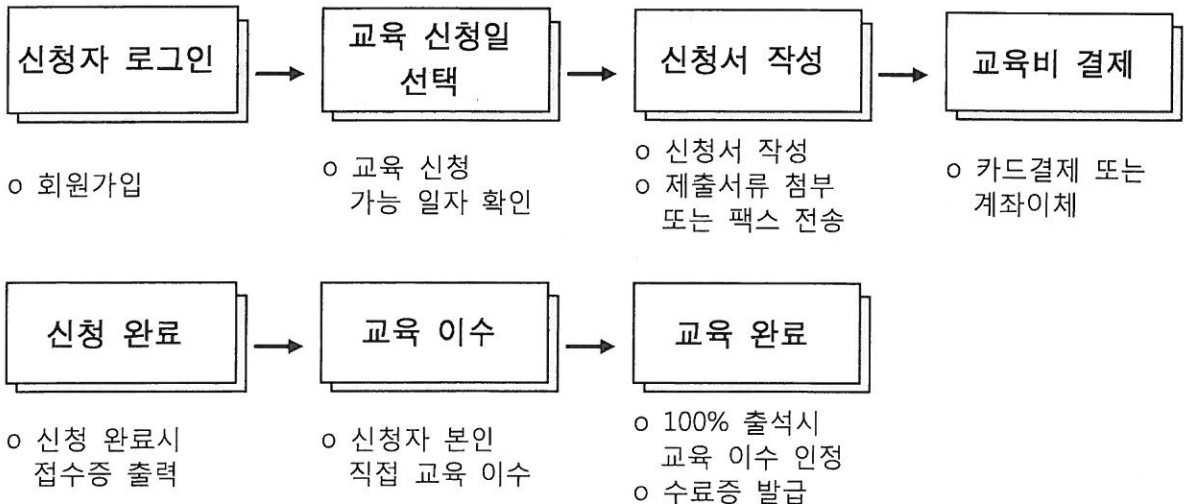
□ 교육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개설	7일(서울)		4일(서울)		18일(부산)		13일(서울)	
	16일(대전)		7일(제주)		23일(서울)		23일(대구)	
	21일(서울)		18일(서울)		31일(원주)		27일(서울)	
	30일(창원)		27일(전주)					
일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일(대전)	18일(서울)	8일(제주)	24일(서울)	2일(부산)	1일(대전)		
	7일(전주)	24일(창원)	15일(대구)	31일(전주)	7일(서울)	12일(서울)		
	13일(광주)	29일(서울)	19일(서울)		16일(광주)	22일(대구)		
	18일(서울)		22일(강릉)		21일(서울)	28일(창원)		

□ 교육장소

지역	교육장소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신대방동) / 2층 회의실]
광주	○ 광주전문건설회관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지평동) / 전문건설회관 2층]
대전	○ 청소년위캔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 지하1층]
부산	○ 부산교원빌딩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 지하2층 대교육장]
대구	○ 대구전문건설회관 [대구시 동구 화랑로 47 (신천4동) / 전문건설회관 7층]
전북	○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동) / 5층]
경남	○ 늘푸른전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삼동동) / 2층]
제주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 4층 중회의실]
강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우산동) / 지하1층 대강의실]
	○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강원도 강릉시 난설현로 131 (초당동) / 1층 다목적홀]

□ 교육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 [edu.kosca.or.kr](http://edu.kosca.or.kr))



□ 교육비 안내

- 교육비 : 150,000원 (교재, 중식포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영수증 발급 :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 교육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02-3284-1080)